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59호 2021. 3. 24.(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320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1

○ 정선군 공고 제2021-355호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4

○ 정선군 공고 제2021-360호「정선군 도시재생 전략 (변경)계획」공고……14

○ 정선군 공고 제2021-363호 개인택시 양도·양수신청 공고……1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320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1. 정선군 고시 제2020-261호(2020. 11. 20)로 최초 결정된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9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13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2) 명 칭: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신설사업(통합정수장)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11,755	□ 수도공급설비 A=11,755㎡(구역면적) □ 시설용량 Q=3,500㎥/일 ▪유입유량계실 A=26.98㎡ ▪착수정 A=92.43㎡ ▪혼화응집침전지 A=210.40㎡ ▪급속여과지 A=265.12㎡ ▪정수지 및 송수펌프실 A=340.40㎡ ▪슬러지처리시설 A=160.00㎡ ▪농축조,분배조 A=59.63㎡ ▪가압장 A=25.76㎡ ▪여과지동 A=397.40㎡(연면적 A=515.09㎡ ▪정수지,송수펌프동 A=161.97㎡(연면적 A=273.81㎡) ▪약품투입동 A=193.96㎡(연면적 A=171.95㎡) ▪농축조동 A=9.84㎡(연면적 A=44.07㎡)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1) 성 명: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
2)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로 1047)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바. 공람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2021. 3. 19.~2021. 4. 02.)

사. 공람장소: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033-560-2519)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m^2)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신동읍 고성리	139	대	780	780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신동읍 고성리	140-7	도	172	6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신동읍 고성리	170-8	전	1,530	1,528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4	신동읍 고성리	140-12	전	4,135	1,394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신동읍 고성리	144-2	도	812	1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6	신동읍 고성리	145-1	전	2,440	2,435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7	신동읍 고성리	146	대	254	254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8	신동읍 고성리	147	대	225	225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9	신동읍 고성리	148-1	도	46	1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10	신동읍 고성리	148-3	전	4,857	4,857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11	신동읍 고성리	164-1	도	6,845	274	-	국(국토교통부)	-	-	-
계				22,096	11,755					

정선군 공고 제2021-355호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2020. 10. 08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상위법령의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여 활동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법에 의거 위원수를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안 제2조제4항)
   ○ 위원수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 (안 제3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03. 22. ~ 2021. 04. 12.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60), 팩스(033-560-2141)

○ 주 소 : (23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 우편은 2021. 4. 12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직접방문은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담당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12조”를 “「아동복지법」 제1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정선군 군수”를 “정선군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0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정선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정선군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5명 ----------.
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청소년과장이 된다.	<삭 제>
② 당연직위원은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	제7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분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제13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9.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본조신설 2014. 9. 26.]
[제1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20. 9. 29.>]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정선군 공고 제2021-360호

「정선군 도시재생 전략 (변경)계획」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정선군 도시재생 전략 (변경)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정 선 군 수

1. 공고내용 : 정선군 도시재생 전략 (변경)계획

2. 주요내용

○ 고한읍 활성화지역 위치 및 면적 오기(誤記) 정정

구 분	당 초	정 정
고한읍 활성화 지역 지정	위치:고한읍 12·13·17·18리 일대 면적:약 155,000㎡	위치:고한읍 10·12·13·17·18·19리 일대 면적:약 170,743㎡

○ 고한읍 활성화지역 전체 면적 증가

- 고한13리 면적 추가 반영 (증 15,673㎡)
- 당초) 170,743㎡ → 변경) 186,416㎡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열람장소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도시재생팀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기타사항 : 승인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033-560-2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1-363호

개인택시 양도·양수신청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희망자가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정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2일

정 선 군 수

1. 접수기간 : 2021. 3. 22. ~ 4. 5. (15일간)

2. 장 소 : 정선군청 안전과 (교통행정팀)

3. 양도대상 차량
- 소 유 자 : 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
- 차량번호 : 강원51바1123

4. 접수대상 :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관내 거주자 중 다음 조건을 갖춘 자임.

가. 양수 기본자격 대상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1) 운전경력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동안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동안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 , 나) 운전경력 합산자

-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단,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1/2로 환산 적용,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거주기간 등

가) 공고일기준 과거 정선군 관내에서 2년간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공고일기준 과거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자.

나. 운전경력이 위 가항에 해당신청자가 없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양수자 등의 기본자격을 완화하여 적용함.

5. 접수 제외 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

6. 구비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자가용운전 경력의 경우 채용관련 증빙서류, 대표자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원부, 기타 운전경력 입증서류)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서 1부.

라.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사.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아.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 1부.

7. 접수결과 조치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격요건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합니다.

나. 접수된 신청자 명단은 개인택시정선군지부(033-592-2580)로 통보하게 되며, 개인택시 양도자와 계약에 의하여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과(033-560-2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